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54호	정성호의원	2024.9.25.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354호	김용태의원	2024.9.26.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471호	추미애의원	2024.9.3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752호	민형배의원	2024.10.1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5073호	송옥주의원	2024.10.30.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제5472호	이준석의원	2024.11.12.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1119호	이해식의원	2025.6.2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2025.7.18.)

나.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8.25.)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8.27.)는 이상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5조제1호).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때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도·감독”을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이때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생 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 1. ----------지원 및 지도·감독 2. (현행과 같음)